

I

2018년도 주요사업 변경 및 신설내용

청소년참여 증진사업

사업명	구분	2017년도	2018년도	비고
청소년 참여위원회	법적 근거	○ 법적근거 -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3항	○ 법적근거 -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4항·제5항·제6항 신설 * '청소년참여위원회' 명시	'17.12.12 개정 '18.6.13 시행
	주요 기능	○ 주요기능 -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, 지문 및 평가 - <신 설>	○ 주요기능 - <유 지> - 청소년 권리·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	
	주요 활동	○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- <신 설>	○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- 시·도별 청소년포럼·토론회 등 병행(연간 1회 이상 개최) * 시·도 및 시·군·구 참여위원회, 지역 청소년 등이 참여	특별회의 지역회의 참고
	구성	○ 학교급별 기준 - 초등학생·중학생 15% 내외 - 고등학생 60% 이하 - 대학생 25% 내외	○ 연령별 기준 - 만 9세~15세 10~20% 내외 - 만 16세~18세 70~80% 내외 - 만 19세~24세 10~20% 내외	
		○ 연 임 - 연임 청소년 10% 내외	○ 연임·중임 - 연임·중임 청소년 10% 내외 (최대 2회까지 청소년참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가능)	
		○ 인 원 - 1개소당 20명 내외	○ 인 원 - (시·도) 개소당 25명~30명 내외 * 다만, 당연직 위원(시·군·구 대표)이 30명 이상인 경우라도 전체 위원 10% 내외로 위촉직 위원 추가 구성 가능 - (시·군·구) 개소당 20명 내외	

		<p>○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- <신 설></p> <p>- 다문화,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청소년 20% 내외 구성</p>	<p>○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- 당연직 : 해당 시·도 내의 모든 시·군·구 참여위원회 대표(위원장 또는 부위원장) - 위촉직 : 교육(지원)청·학교 추천, 청소년 투표 등을 통해 일부 구성 가능 * 당연직 위원(시·군·구 대표)이 20명 미만인 시·도는 기관추천 등을 통해 대표성 있는 위원 위촉(특히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, 학생회 대표 등)</p> <p>- 다문화,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청소년 10% 내외 구성</p>	대표성 제고
		<p>○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 - (선발방법) 공개모집 및 추천 → 서류 및 면접심사 → 선발 및 위촉</p>	<p>○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 - (선발방법)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시행</p> <p>① 청소년 선거 : 추천 및 공개모집 등으로 후보를 구성한 후, 지역 청소년의 투표로 선출</p> <p>② 기관추천 : 교육(지원)청·학교, 청소년 단체·시설 등 추천을 받아 학생회 대표 등을 선발 * 반드시 기관 추천서 필요</p> <p>③ 공개모집 및 심사 : 공개모집(추천병행 가능) → 서류 및 면접심사 → 선발 * 선발 이후 또래 청소년의 추천서 (10명 이상)를 제출(권고사항)</p>	대표성 제고
청소년 특별회의	운영 (구성)	○ 시·도 추천을 받아 청소년 위원 구성	○ 시·도 참여위원회 등으로 구성, 연합회의체로 운영 * 17개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역회의를 개최	참여위 우수사례 공유 확산
	정책 제안	○ 매년 정책의제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정책을 제안	○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과제 중 범정부적 정책을 제안	
	서포터즈	○ 명칭 : 청소년운영지원단	○ 명칭: 청소년특별회의 서포터즈	
	연간 추진일정	○ 출범식(3월) ○ 시·도 지역회의(3월~9월)	○ 출범식(5월) ○ 시·도 지역회의(3월~10월) * 단 시도 청소년포럼·토론회 등은 정책제안 일정을 고려하여 5월~8월	

II 청소년 정책참여

1-1 사업개요

가. 추진배경

- 청소년의 사회성, 리더십 등 다양한 역량 함양을 통해 민주시민 육성
-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및 UN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참여 확대 권고 준수

나. 추진경과

-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에 ‘청소년위원회’를 설치하고, 1999년 4월 제주도, 2000년 6월 경기도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‘청소년참여위원회’ 구성·운영 확대
-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전국 단위의 청소년 참여기구 요구 증대
 - 2004년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설정·추진, 점검하는 ‘청소년특별회의’를 시범 개최하고 2005년부터 매년 개최
- 2012년 청소년 참여기구 역할 강화를 통한 청소년 중심의 정책추진으로 청소년 정책 UN공공행정상 수상, 청소년 참여기반 확대
- 2018년 청소년 참여기구 대표성 및 연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를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개최

다. 사업개요

구분	청소년특별회의	청소년참여위원회	청소년운영위원회
기능	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에 청소년 참여	청소년들이 국가 및 지자체 정책과정에 참여	청소년 수련시설 사업·프로그램 운영에 참여
근거	청소년 기본법 제12조 (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)	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	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(청소년운영위원회)

라. 추진체계

추진주체		기능 및 역할
여성가족부	청소년정책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 참여기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 ○ 청소년 참여기구 사업지침 수립, 국고보조, 홍보 등 ○ 청소년 참여기구 사업 점검·평가 * 청소년운영위원회 : 청소년활동진흥과
	위탁 운영기관 (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특별회의 운영·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출범식, 예비회의, 본회의 등 기획·진행 - 시·도 위원장단, 청소년대변인단 구성 및 운영 - 전문가 자문단, 청소년특별회의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○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·관리
시·도	담당 사업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, 예산 지원 등 총괄 ○ 시·도 청소년포럼·토론회·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, 자치단체장 간담회 등 행·재정적 지원 ○ 정책과제 발굴 등 정기회의 관리 ○ 운영 성과(제안과제 모니터링 등) 관리
	위탁 운영기관 (시·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(특별회의 지역회의) 운영·관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집·구성, 정기회의 및 참여활동 등 기획·진행 - 시·도 청소년포럼·토론회·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지원 ○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를 위한 연계·협력지원 (컨설팅, 연합활동 등)
시·군·구	담당 사업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, 예산 지원 등 총괄 ○ 자치단체장 간담회, 청소년포럼·토론회 등 행·재정적 지원 ○ 정책과제 발굴 등 정기회의 관리 ○ 운영 성과(제안과제 모니터링 등) 관리
	위탁 운영기관 (위탁 운영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·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집·구성, 회의 및 참여활동 등 기획·진행 - 시·도 단위 연계활동 참여 및 협조(청소년포럼·토론회 등 참석, 시·군·구 대표 위원 시·도 참여위원회 참석 등)

마. 2018년 사업 추진방향

□ 청소년참여기구 대표성 제고

-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역 내 모든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 (위원장 또는 부위원장)를 포함하여 구성
-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시 관내 교육(지원)청·학교, 청소년단체·시설 등 추천, 청소년 선거 등을 통해 일정비율 구성 가능
 - ※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게 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성방식 시행 가능
-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여 참여기구 간 연계 강화
 - ※ 시·도 청소년포럼·토론회·정책 제안대회(5월~8월),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정기회의 (4월~10월) 등이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에 해당

□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

-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청소년 권리·인권 모니터링, 개선 제안 등 기능 부여
- 시·도 단위에서 청소년포럼·토론회·정책 제안대회 등을 개최(연1회 이상)
 - ※ 참여기구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의견수렴 할 수 있도록 운영
 - ※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,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은 시·도 단위 연계활동에 적극 참여 필요

□ 청소년특별회의 운영체계 개편

-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연합회의체로 운영
-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제안 중 범정부적 정책과제를 정부부처에 제안
- 본회의를 연간 활동결과 및 정책과제를 발표하고,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참여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으로 개편

가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

□ 법적근거

-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 청소년기본법 개정내용(공포일 2017.12.12. 시행일 2018.6.13.)

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12.12.>

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12.12.>

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12.12.>

□ 주요기능

-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, 자문 및 평가
- 청소년 권리·인권 모니터링, 개선 제안
- 청소년포럼, 토론회, 정책 제안대회 등 참여 및 개최

1) 위원회 명칭은 ‘청소년참여위원회’로 통일하고, 지자체별 실정(이전 사용 명칭 등)에 따라 부제 사용 가능

□ 운영현황

- 중앙청소년참여위원회 : 1개소 운영지원
-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: 188개소(시·도 17개, 시·군·구 171개) 운영지원
 - 시·도 : 1,000만원 (국고보조율 50%)
 - 시·군·구 : 280만원 (국고보조율 50%)

■ 2018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■

구분	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개소수	188	6	3	3	10	2	2	6	1	32	19	5	16	15	23	24	20	1
시·도	17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	1
시·군·구	171	5	2	2	9	1	1	5	-	31	18	4	15	14	22	23	19	-

나. 시·도 및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

(1) 역 할

- 지자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, 자문 및 평가
- 지자체 청소년 권리·인권 모니터링, 개선 제안
- 지역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고, 청소년포럼, 토론회, 정책 제안대회 등 참여 및 개최
 - ※ 시·도 단위 반드시 연 1회 이상 개최
 - ※ 청소년특별회의의 출범식(5월), 정책제안(9월), 본회의(11월) 일정 등을 고려하여 5월~8월 중 개최

(2) 구 성

- 기본방향
 - 다양한 청소년으로 구성하되, 교육(지원)청·학교, 청소년단체·시설 등 추천을 통한 대표 포함, 청소년 직접선거 등 구성방식을 다양화하여 대표성 제고
- 기 준
 - 공 통(시·도, 시·군·구)
 - 지역 내 청소년(만 9세~24세)
 - 연임·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10% 내외로 구성
 - ※ 청소년은 최대 2회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가능(소속지역 변경된 경우 포함)

- 연령별 기준

- 연령·성별 등 구분·선발하되, 연령별 인구 및 참여역량을 고려하여 구성(학교 밖 청소년 포함)
- 고등학생 연령(만 16세~18세)은 일반고·특성화고·특목고·자율고 등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구성

구분	계	만 9세~15세 (초등·중학생 연령)	만 16세~18세(고등학생 연령)				만 19세~24세
			소계	일반	특성화	특목, 기타	
비율	100%	10~20% 내외	70~80% 내외	60~70%	5~10%	5~10%	10~20%

※ 관할구역 내 연령별 청소년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

○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

- 1개소당 25명~30명 내외

※ 다만, 당연직 위원(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)이 30명 이상인 시·도(경기 등)는 전체 위원 10% 내외로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촉직 위원 구성 가능

- 당연직 : 해당 시·도의 모든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대표(위원장 또는 부위원장)

- 위촉직

- 관내 교육(지원)청·학교 추천(학생회 대표), 청소년단체·시설 등 추천(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), 지역 청소년 선거 등을 통해 위촉 가능

※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게 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성방식 시행 가능

※ 특히, 당연직 위원이 20명 미만인 시·도의 경우 기관추천(학생회 대표,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), 지역 청소년 선거 등을 통해 대표성 있는 위원 위촉

- 다문화, 북한이탈, 근로, 장애,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청소년을 일정 비율(10% 내외) 구성

※ 다문화가족지원센터,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홍보 및 협조 요청

○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

- 1개소당 20명 내외

- 공개모집 이외에 관내 교육(지원)청·학교 추천(학생회 대표), 청소년단체·시설 등 추천(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), 지역 청소년 선거 등을 통해 구성 가능함

※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게 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성방식 시행 가능

- 다문화, 북한이탈, 근로, 장애,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(시·군·구)에서 유관기관에 홍보 및 협조 요청

□ 모집 및 구성 【붙임1~9】

○ 모집시기 : ~3월 초(모집공고 : 2월)

※ 시·도는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일정을 고려하여 모집하되, 시·군·구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늦어도 3월 중순까지 구성을 마칠 필요

○ 구성방식 :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참여 청소년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구성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시행

※ 지역 실정에 맞게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식 가능하며, 복수의 방식 혼합하여 시행 가능

① 청소년 직접선거

- 추천(학생회 대표 등) 및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를 구성한 후, 지역 청소년의 투표(온·오프라인)로 위원 선출

※ (절차예시) 후보 구성(학생회 대표(70%), 공개모집(30%) 등) → 청소년투표 → 선출 및 위촉

② 기관추천

- 해당 지역의 교육(지원)청·학교, 청소년단체·시설 등 추천을 받아 학생회 대표,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등 대표성 있는 청소년을 선발

※ (절차) 추천의뢰(기관) → 심사 또는 청소년투표 등 → 선발(선출) 및 위촉

③ 공개모집(추천병행)

-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, 추천을 병행(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)하여 기회균등 및 다양한 청소년 참여 보장

※ 공개모집 시 학교, 청소년 관련기관·단체의 추천서 등을 참고하여 우수청소년 선발

- 지자체 주관으로 심사위원회 구성, 심사 등 절차를 통해 위원 선발

※ (절차) 모집공고 및 추천의뢰 → 서류 및 면접심사 → 선발 및 위촉

- 선발 과정에서 또래 청소년의 추천서(10명 이상)를 지자체(위탁기관)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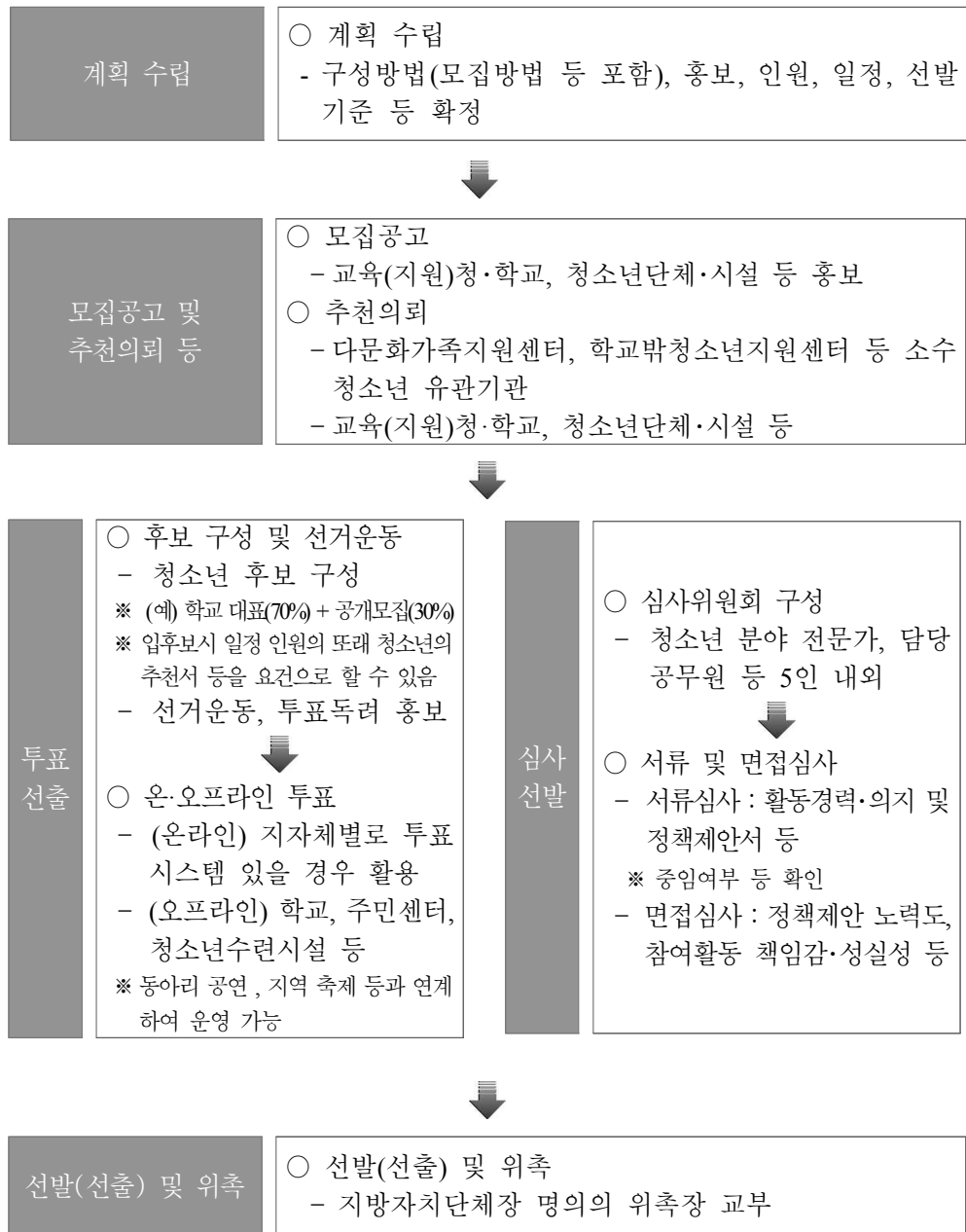
※ 청소년 스스로 참여기구를 홍보하고 활동의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(모집 시 또는 선발 후)

○ 위촉 및 임기

- 최종 선발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위촉장 교부

-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, 최대 2회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가능(소속지역 변경된 경우 포함)

○ 절차(주체 : 시·도, 시·군·구)



□ 해 측 【붙임9】

○ (공통)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해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측 가능

해측 기준(안)
<p>① ○○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측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2.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활동 참가율이 50% 미만인 자 3. 범죄, ○○청소년참여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○○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이 해측에 동의한 자 4.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<p>② 제1항제1호에 따른 “특별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천재지변 2. 학교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. 본인 질병과 사고 4.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(2촌이내)의 상(喪) 및 결혼 5.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

○ (시·도)

- 당연직 위원이 해당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해측될 경우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도 위원직 상실
 - ※ 해당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직무 대행자(부위원장 등)가 보임됨
- 당연직 위원이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해측될 경우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님
 - ※ 해당 시·군·구 참여위원회는 해측된 위원 이외의 대표(부위원장 등)를 정하여 시·도에 통지 필요

(3) 주요 활동

구 분	주 기	내 용
시·도	연 8회 이상	- 시·도(시·군·구)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- 청소년 권리·인권 모니터링, 개선 제안
시·군·구	연 4회 이상	- 청소년포럼·토론회·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·참여

□ 시·도(시·군·구)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, 청소년 권리·인권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

○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하고, 해결방안 모색

- 시·도(시·군·구)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

※ 예 시 : 안전한 등하굣길, 청소년참여예산제 활성화 등

- 지역사회 내 청소년 권리·인권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, 개선 제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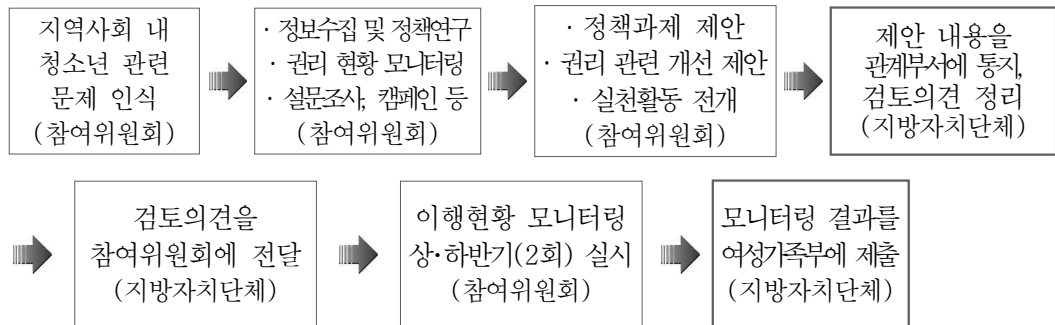
- 소관부서에 정책제안서 제출 등 정책 제안

-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스스로 실천활동 전개(캠페인 등)

○ 각종 선거 후보자의 청소년 정책 관련 공약에 대한 제안·점검

○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의 추진·이행현황 모니터링

<주요활동 과정>



□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·토론회·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·참여

○ 청소년포럼·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참여활동 사례 공유

-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·도 단위 연계활동 적극 참여(시·도 단위 청소년포럼·토론회 등 참석)

○ 현안 발굴을 위한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, 의견수렴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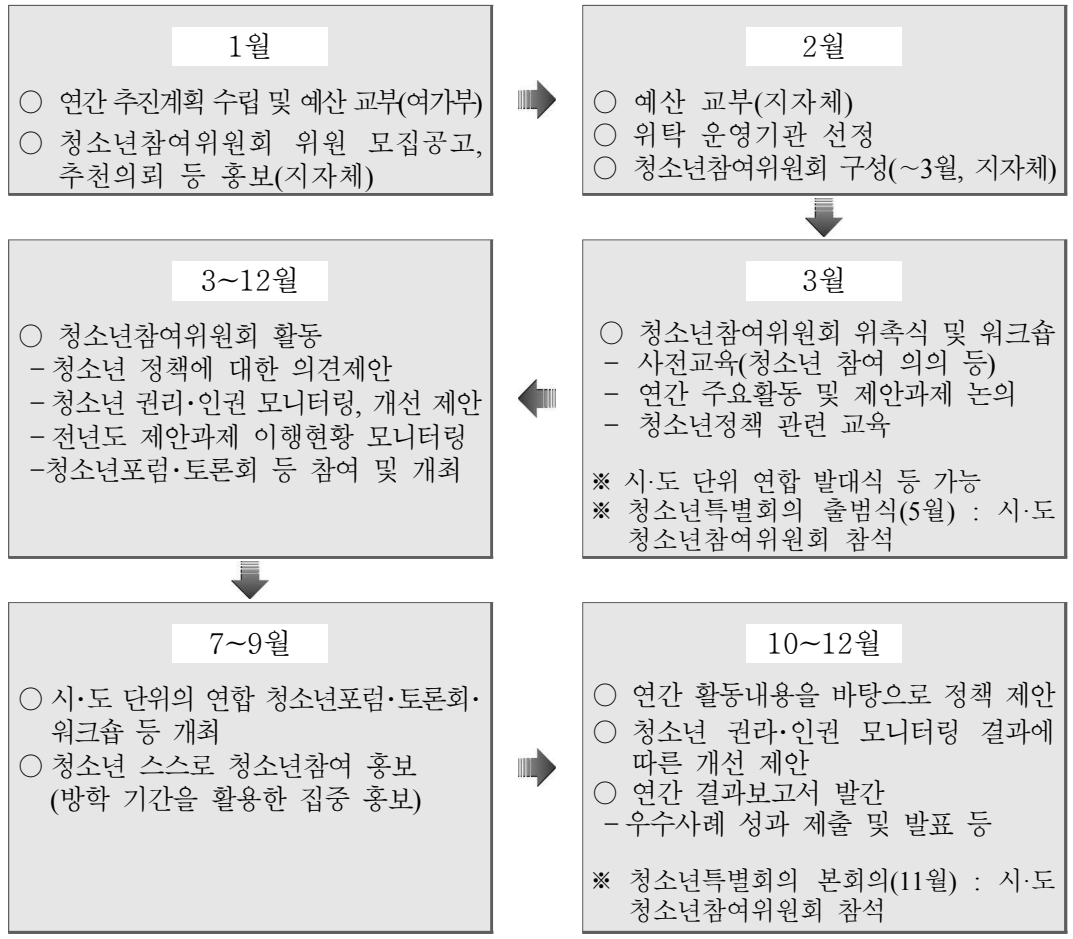
○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·진행하는 행사 추진

○ 타 청소년참여기구와의 간담회 등 교류활동

Tip : 청소년참여위원회 안건 선정 및 검토 요령

-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안건을 선정하거나, 각 부서에 수요조사(기관 인터넷 등 활용)를 통해 선정된 안건을 청소년들에게 제안할 수도 있음
 - 구체적 안건으로 선정하고, 선정된 안건은 위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전까지 공지,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의견을 제안 할 수 있도록 지도
- 예) “청소년전화 1388”을 홍보하고자 할 경우,
 안건 ☞ “청소년전화 1388” 홍보 방법(×) → 매체를 통한 홍보 방법(○)
 제안 ☞ 라디오를 통해 홍보(×) → 청소년 구독자가 많은 ○○○프로그램의 ○○○ 코너에서 사연 읽어주기 이벤트(○)

(4) 연간 추진일정(예시)



(5) 협조사항

□ 지역 내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구성·운영 확대

- 지역 단위에서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미설치 시·군·구에 대해 우선 지자체 자체적으로 구성·운영 추진 필요

* '17년 기준 서울 강동구, 동작구, 송파구, 중랑구, 부산 남구, 북구, 해운대구 등 32개 위원회가 자체 운영 중(현재 국고 미지원 상태로 예산확보 시 위원회 설립연월일순으로 순차 지원 예정)

* (국정과제 53-3-3)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및 창의적 역량 강화 :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참여예산제 확대('22년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대)




□ 국고보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, 사업 수행 시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널리 공지하여야 함

- 인쇄물·홍보물 등에 ‘여성가족부, ○○시·도(자치단체)가 지원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’임을 표시

□ 시·도 및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원활한 업무 협조

* 시·도 참여위원회 당연직 위원(시·군·구 대표)이 시·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·군·구(운영기관) 협조 등 필요

라. 홍보 및 지원

홍 보	지 원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활동 언론 홍보 등 총괄 - 행사 및 참여활동 보도 등 ○ 청소년 참여포탈 “With Youth” 운영 - 참여기구 간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 ○ SNS(facebook)를 통한 홍보 활성화 ○ 구성 시 교육부 홍보협조, 포스터 제작 등 홍보 지원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수기관 발굴·표창 - 우수사례 발굴 및 장관상 수여 ○ 지도자(공무원) 역량강화 - 사업안내·운영매뉴얼 배포 및 교육 실시 ○ 참여기구 간 정보교류 및 연계 등 	홍 보	지 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참여위원회 홍보물 제작·배포 (캠페인 등 대외 활동 시 적극 활용) ○ 지역 TV, 신문 등에 모집, 우수 활동 사례, 지역회의 활동 등 홍보 예) 참여위원회와 자치단체장 간담회 등 ○ 청소년 참여포탈 “With Youth”에 활동 상황 게시(사진, 행사개최 안내 등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단체장 등과의 간담회 추진 ○ 타 참여기구와의 연합 워크숍 및 토론회 등 개최 * 시·도 연합활동 추진 및 참여 ○ 참여활동 우수자 및 지도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○ 위원 임기 종료 시 활동확인서 교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우수기관 발굴·표창 - 우수사례 발굴 및 장관상 수여 ○ 지도자(공무원) 역량강화 - 사업안내·운영매뉴얼 배포 및 교육 실시 ○ 참여기구 간 정보교류 및 연계 등 							
홍 보	지 원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참여위원회 홍보물 제작·배포 (캠페인 등 대외 활동 시 적극 활용) ○ 지역 TV, 신문 등에 모집, 우수 활동 사례, 지역회의 활동 등 홍보 예) 참여위원회와 자치단체장 간담회 등 ○ 청소년 참여포탈 “With Youth”에 활동 상황 게시(사진, 행사개최 안내 등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단체장 등과의 간담회 추진 ○ 타 참여기구와의 연합 워크숍 및 토론회 등 개최 * 시·도 연합활동 추진 및 참여 ○ 참여활동 우수자 및 지도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○ 위원 임기 종료 시 활동확인서 교부 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단체장 등과의 간담회 추진 ○ 타 참여기구와의 연합 워크숍 및 토론회 등 개최 * 시·도 연합활동 추진 및 참여 ○ 참여활동 우수자 및 지도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○ 위원 임기 종료 시 활동확인서 교부 							

마. 행정사항

- 사업계획서 등 제출(각 시·도)
 - '18. 1월 : '18년 사업계획서, '17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**【붙임11】**
 - 담당 공무원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인원, 구성, 선발 일정, 활동계획 및 위탁 운영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
 - * 시·도 단위 청소년포럼·토론회 등 개최 계획 반드시 포함(5월~8월 중 개최)
 - 사업결과 보고서 제출 시 전년도 제안과제 반영여부 및 이행현황 등 포함
 - '18. 4월 : '18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현황 제출
 -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현황 포함
-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
 -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제·개정
 -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도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
 - 청소년참여위원회 제안 정책과제를 소관부서에 통지하고, 검토의견을 취합·정리 하여 청소년에게 전달(서면·구두,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 등)
 -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지도자의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 필요
 -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, 청소년참여위원회 서포터즈 등 구성·운영 가능
- 기 타
 - 증빙서류(영수증 등) 제출 시 활동 참가 청소년위원에게 교통비 지급 가능
 - * 참가수당 별도 지급 불가
 -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청소년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 가능(시·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, 청소년수련시설 등)
 - 위탁기관 선정 시 청소년 참여 관련 사업 실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 - 관내 교육청 협의 등을 통한 자원봉사 실적 인정 등 가능(지자체별)

<참고>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(안)

○○시·도(시·군·구)²⁾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○○도 청소년참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‘청소년’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○○도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·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
2. 타 시·도 및 도내 시·군·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
3.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
4. 기타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·의견 제안·행사 진행 등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○○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은 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 운영·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제5조(권리와 의무)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○○도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
2) 시·도(시·군·구)는 이하 “도”로 통일한다.

- 제6조(위촉) ① 위원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 단, 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회 활동은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다. 단, 2회 이상 위원회 활동을 한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% 내외로 한다.
-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.
-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7조(해촉) ①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
 2.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% 미만인 자
 3. 범죄,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동의로서 해촉을 의결한 자
 4.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“특별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천재지변
 2. 학교시험
 3. 본인 질병과 사고
 4.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(2촌 이내)의 상(喪) 또는 결혼
 5.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개최) ① 정기회의는 연 8회 이상(시·군·구·연 4회 이상)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견수렴) ① 도지사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,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 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.

제11조(경비)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보상)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○○도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, 문화탐방·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13조(위탁)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내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규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가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

□ 법적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2조(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)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·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.

□ 운영체제

-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연합회의체로 운영
-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(3월~4월) →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(5월) → 시·도별 지역회의(3월~10월) →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(11월)
 - ※ 출범식 및 본회의는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모두 참석

나. 시·도 지역회의

□ 참석대상

-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(시·도별 25명~30명 내외)
 - ※ 그 밖에 타 참여기구 청소년, 지역 청소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최 가능

□ 회의내용

-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한 포럼·토론회·정책 제안대회 등
- 청소년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워크숍 등
 - ※ 시·도 청소년포럼·토론회·정책 제안대회(5월~8월),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정기회의 등이 청소년특별회의의 지역회의에 해당
 - ※ 캠페인, 설문조사, 온·오프라인 의견수렴 등 병행 가능

다. 추진기구

(1) 개요

구분	구성인원	기능 및 역할
의장단	3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별회의 주제 및 대표로서 활동(의장 1명, 부의장 2명) • 본회의 등 행사 기획·진행 등
지역 위원장단	17명 (각 지역 1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네트워크 구축, 정책과제 공유
청소년 대변인	17명 (각 지역 1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참여기구 활동 등 대외 홍보 기획·추진
전문가 자문단	5명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책과제 발굴 지도, 전문정보 제공 및 자문
청소년특별회의 서포터즈	10명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획·홍보, 본회의 등 행사 지원 • 전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, 참여포탈 운영지원 등

* 의장단 구성 시 반드시 남성 및 여성 청소년을 1명 이상 포함

* 추진기구 중 '의장단, 지역 위원장단, 청소년대변인'은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

(2) 지역 위원장단

□ 구성

- 각 시·도 위원장 1명, 총 17명으로 구성·운영

□ 역할

- 청소년참여위원회 간 네트워크 구축
- 지역 위원장단 회의 등에 참석하여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과제 공유 등

(3) 청소년대변인

□ 구성

- 각 시·도 1명, 총 17명으로 구성·운영
- ※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홍보분과장 등으로 구성 가능

□ 역할

- 지역회의 등 청소년 참여활동 관련 대내·외 홍보 기획·추진
- 지역회의 SNS, 인터넷 커뮤니티 등 운영

(3) 전문가 자문단

□ 역할

- 정책과제 분석·체계화 지원 및 자문
- 청소년참여활동 관련 전문정보 제공 및 자문
 - ※ 출범식, 본회의, 지역회의 등 참여

□ 구성

- 청소년 참여 관련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
- 임기는 1년이며, 연임·중임 가능

(4) 청소년특별회의 서포터즈

□ 역할

- 기획·행사지원 : 행사기획, 출범식, 본회의 등 행사지원 등
- 홍보 : 참여포탈 운영지원, 대내·외 홍보 등
- 모니터링 : 전년도 정책과제 이행 여부 점검 등

□ 선발

○ 구성

- 청소년특별회의 또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이내
 - ※ 만 19세~24세 청소년으로 구성
- 연임·중임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특별회의 서포터즈의 10% 내외로 구성

○ 모집 및 선발

- 모집공고 →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→ 최종 선발
- 임기는 1년이며, 최대 2회까지 활동 가능(기존 청소년운영지원단 활동 포함)

라. 연간 추진일정 (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연간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추진)

(1) 기본계획 수립 및 구성(1~4월)

기본계획 수립(1월)

- 청소년사업안내 시달(여성가족부→지자체 등)
- 청소년참여기구(참여위원회, 특별회의) 운영 위탁, 보조금 교부 등(여성가족부, 지자체)

구 성(3월~4월)

-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(시·도별 늦어도 4월까지 구성 필요)
- 전문가 자문단, 청소년특별회의 서포터즈 등 구성

(2) 출범식(3월~5월)

시도별 출범식(3월~5월)

- 청소년 참여활동 교육, 위원장단 선출, 연간 일정안내 등
- ※ 시·도 내 타 참여기구와의 연합 출범식 등 가능

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(5월) ※ 17개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등 참석

- 의장단(3명) 선출, 지역 위원장단 회의 등 개최
- 특별회의 역할·기능, 정책과제 발굴 등에 대한 교육
- 전년도 제안 정책과제 모니터링 안내

(3) 시·도 지역회의 개최(3월~10월)

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※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내용 참고

-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정기회의 등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(전문가 자문단 참가 및 지도)
- 17개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과제 공유
- 전년도 정책과제 이행 현황 등 모니터링 활동

시·도별 청소년포럼·토론회·정책 제안대회 등 개최(5월~8월초) ※ 필수

- 정책과제 구체화, 지역 청소년 의견수렴 등
- 시·군·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정책과제 중 우수 정책제안 발굴 등

(4) 정책과제 종합 및 정리(8월~9월)

시·도별 정책과제 선정(8월)

-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역회의 개최 결과 등을 토대로 청소년참여위원회(시·도, 시·군·구), 지역 청소년 정책제안 등 가운데 범정부적 정책과제 선정 및 종합

예비회의(9월)

- 지역 위원장단, 전문가 자문단 등을 활용하여 정책과제 체계화
- 관계부처에 제안할 최종 정책과제 선정

(5) 관계부처 협의 및 본회의 개최(10~12월)

관계부처 협의(10월)

-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연간 발굴한 정책과제 중 범정부적 과제를 선정하여 소관부처와 협의, 정책 연계성 검토
- 청소년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책 수용률 제고

본회의(11월) ※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, 지도자 및 공무원 등 참석

-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활동 사례 공유
- 정책과제 제안문 채택, 정부에 제안
- 정책과제에 대한 정부부처의 검토의견(수용여부 포함) 등 보고

구 분	주요내용	비 고
기본계획 수립 (1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위탁, 예산 국고보조 신청 및 교부 	
구 성 (3월~4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(각 25명 내외) • 전문가 자문단, 청소년특별회의 서포터즈 등 구성 	구성 이후 시·도별 출범식 개최
출 범 식 (5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장단(3명) 선출, 지역 위원장단 회의 등 개최 • 특별회의 역할·기능 및 정책과제 발굴 등에 대한 교육 • 전년도 제안 정책과제 모니터링 안내 	시·도 참여위원회 전문가 자문단, 지도자, 공무원 등
지역회의 개최 (3월~10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·도별 정책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• 시·도별 청소년포럼·토론회·제안대회 등 개최 ※ 행사 일정 사전 공유, 정책제안 일정 고려하여 8월초까지 개최 필요 	

<p>예비회의 (9월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·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출한 정책과제 체계화 • 정책과제 관련 캠페인, 각종 행사개최 등 	<p>의장단, 지역 위원장단, 전문가 자문단 등</p>
<p>관계부처 협의 (10월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계부처 협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책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수용여부 확인 ※ 청소년정책위원회 안건 상정 	
<p>본 회의 (11월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본회의 개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·도 참여위원회 등 활동사례 공유 - 최종 정책과제 정부부처 제안 및 연간 활동결과 보고 	<p>시·도 참여위원회, 전문가 자문단, 지도자, 공무원 등</p>
<p>평가회의 개최 (12월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가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서 발간 	<p>의장단, 지역 위원장단, 전문가 자문단</p>

라. 행정사항

사업계획서 등 제출(각 시·도)

- '18. 1월 : '18년 사업계획서, '17년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**【붙임11】**
 - 담당 공무원은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개최 계획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
 - * 시·도 단위 청소년포럼·토론회 등 개최 계획 반드시 포함(5월~8월 중 개최)

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

-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지도자의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 필요
-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청소년특별회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필요

기 타

- 증빙서류(영수증 등) 제출 시 활동 참가 청소년 위원에게 교통비 지급 가능
 - ※ 참가수당 별도 지급 불가
- 활동확인서는 청소년 참여포털(www.youth.go.kr/ywith)을 통해 발급 가능 **【붙임10】**

[참고자료]

연도별 정책의제 및 과제 현황

년 도	정 책 의 제
2004년 (시범)	○ 청소년 인권·참여 - 시범사업 :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
2005년 (제1회)	○ 청소년참여기반 확대(20개 과제) -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영역 18과제 수용
2006년 (제2회)	○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(37개 과제) -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
2007년 (제3회)	○ ‘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’ 제안(18개 과제) -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
2008년 (제4회)	○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(35개 과제) -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
2009년 (제5회)	○ 청소년,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(20개 과제) -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
2010년 (제6회)	○ 자기주도적 역량개발, 존중받는 청소년(53개 과제) -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
2011년 (제7회)	○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,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(41개 과제) -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6개 수용
2012년 (제8회)	○ 자유로운 주말,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(89개 과제) -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81개 수용
2013년 (제9회)	○ 꿈을 향한 두드림, 끼를 찾는 청소년(29개 과제) - 진로체험활동 인프라 확대 등 28개 수용
2014년 (제10회)	○ 안전한 미래,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(31개 과제) - (가칭) ‘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’ 설치·운영 등 28개 수용
2015년 (제11회)	○ 청소년의 역사이해, 미래를 향한 발걸음(23개 과제) - 역사이해를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등 20개 수용
2016년 (제12회)	○ 틀림이 아닌 다름, 소수를 사수하라(29개 과제) -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28개 수용
2017년 (제13회)	○ 청소년,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(30개 과제) -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24개 수용

【붙임1】 청소년참여위원회 : 구성 계획(예시) - 투표 여부 등에 따라 변경

제〇〇기 〇〇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계획(안)

1. 심사 추진일정

- 공고 및 접수 : 〇〇〇〇. 〇〇. 〇〇 (월)
- 1차 심사(서류) : 〇〇〇〇. 〇〇. 〇〇 (수) / 〇〇도청 회의실
-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: 〇〇〇〇. 〇〇. 〇〇 (금) / 홈페이지 공지
- 2차 심사(면접) : 〇〇〇〇. 〇〇. 〇〇 (월) / 〇〇도청 회의실
- 최종합격자 발표 : 〇〇〇〇. 〇〇. 〇〇 (화) / 홈페이지 공지 및 전화 통보
- ※ 선발인원 : 각 지역별 비례에 맞게 인원 구성(선발하는 기간은 연초 2~3월 내 모두 구성 완료)

2. 접수 현황

※ 지역별 현황에 맞게 공개모집(학교급별, 종류별 구분 등), 추천(자치기구 청소년, 시·군·구 청소년 등)으로 구분하여 현황 작성

3. 심사위원회 구성

- 구성 기준 :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를 포함하여 〇명으로 구성
- 심사위원회 구성(안)
 - 1차 심사(서류)

성 명	소속 및 직급	성 명	소속 및 직급

- 2차 심사(면접)

성 명	소속 및 직급	성 명	소속 및 직급

4. 선발 기준 및 방법

○ 선발 방법

- 1차 심사(서류) : 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
- 2차 심사(면접) : 최종 선발

○ 선발 기준 :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 기준(별첨 참조)

○ 선발 세부 기준

- 연임·중임 청소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청소년 위원의 10% 내외로 구성 (청소년은 최대 2회까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가능)
- 대표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으로 구성되도록 심사하여 선발
 - 연령, 성별 등 비율을 고려하여 선발
 - 고등학생 연령은 일반고·특성화고·특목고·자율고, 대학은 전공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생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선발
 - 근로, 북한이탈, 다문화, 장애,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수청소년을 포함하여 대표성 확보

【붙임2】 청소년참여위원회 : 청소년 위원 선발 공고(예시) - 구성 계획에 따라 변경

○○도 공고 <제0000-00호>

제○○기 ○○○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선발(안)

○○도에서는 청소년들을 자치단체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, 지역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, 제○○기 ○○○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·운영 할 예정이오니, ○○○도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■ 지원방법

- 지원자격 : ○○○도 청소년
- 접수기간 : ○○○○년○○월 ○○일~○○월 ○○일(○요일)
- 구비서류
 - 1차 서류 심사 : 지원신청서(자기소개서, 정책제안서, 추천서* 포함)
 - * 추천서 : 학교, 청소년단체·시설 등
 - 최종합격자 : 보호자 동의서 및 학교장 동의서

■ 접 수

- 접수처 : ○○○도○○○○과 담당(ooooo@oooo.go.kr)
- 문의처 : ○○○도 홈페이지(www.oooo.go.kr)
○○도○○○○과(☎000-000-0000)

■ 선발계획

- 1단계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: ○○○○년○○월 ○○일(○요일)
- 2단계 면접 : ○○○○년○○월 ○○일(○요일) / ○○○○ 대회의실
- 최종 합격자 발표 : ○○○○년○○월 ○○일(○요일)
 - * 최종합격자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전화 통보예정
www.withyouth.go.kr(청소년참여포탈), www.oooo.go.kr(○○도청)
- 오리엔테이션 : ○○○○년○○월 ○○일~○○월 ○○일(불참 시 합격 취소)
- 위촉시 : ○○○○년○○월 ○○일(○요일)
 - * 위촉기간 중 회의 및 행사 불참 등 활동이 부진할 경우 해촉될 수 있음

【붙임3】 청소년참여위원회 : 청소년 위원 서류 및 면접 심사 기준(예시)

1차(서류) 심사 기준(예시)

심사항목	배점	평가세부내용	비 고
합 계	100		
자기소개서	40		
■ 참여활동 이해도	10	• 청소년 참여활동 기능·역할에 대한 이해 정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우수 : 10~9 ■ 우수 : 8~7 ■ 보통 : 6~5 ■ 미흡 : 4~3
■ 참여활동 의도·의지	15	•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려는 의도 및 활동 의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우수 : 15~13 ■ 우수 : 12~10 ■ 보통 : 9~7 ■ 미흡 : 6~4
■ 개인의 인성	10	• 봉사정신, 사회적 협력 정신, 어려운 환경 극복 등 인성(*소수청소년 우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우수 : 10~9 ■ 우수 : 8~7 ■ 보통 : 6~5 ■ 미흡 : 4~3
■ 체계적 사고	5	• 자기소개서의 체계성, 논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우수 : 5~4 ■ 우수 : 4~3 ■ 보통 : 3~2 ■ 미흡 : 2~1
정책제안서	60		
■ 정책제안의 창의성	20	• 제안한 정책의 창의성 및 독창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우수 : 20~16 ■ 우수 : 15~11 ■ 보통 : 10~6 ■ 미흡 : 5~1
■ 정책제안의 논리성	15	• 정책제안서 내용의 논리성 및 구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우수 : 15~13 ■ 우수 : 12~10 ■ 보통 : 9~7 ■ 미흡 : 6~4
■ 정책제안의 기여도	15	• 제안한 정책의 사회적 필요성과 기여정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우수 : 15~13 ■ 우수 : 12~10 ■ 보통 : 9~7 ■ 미흡 : 6~4
■ 정책제안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안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 •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 여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우수 : 10~9 ■ 우수 : 8~7 ■ 보통 : 6~5 ■ 미흡 : 4~3

2차(면접) 심사 기준(예시)

심사항목	배점	평가세부내용	평가척도
합 계	100		
자기소개	20		
■ 참여활동 의지 · 책임감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 및 의지 •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가능 여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우수 : 20~16 ■ 우수 : 15~11 ■ 보통 : 10~6 ■ 미흡 : 5~1
의제발표	30		
■ 정책제안의 이해도, 노력도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책제안 목적, 배경,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설명능력 • 정책제안서 발표 능력 및 노력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우수 : 30~26 ■ 우수 : 25~21 ■ 보통 : 20~16 ■ 미흡 : 15~11
질의응답	50		
■ 사회성, 협력성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중 타 청소년과의 사회적 협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우수 : 20~16 ■ 우수 : 15~11 ■ 보통 : 10~6 ■ 미흡 : 5~1
■ 성실성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방침 및 과제발굴, 행사 등 참여의 성실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우수 : 15~13 ■ 우수 : 12~10 ■ 보통 : 9~7 ■ 미흡 : 6~4
■ 문제해결력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문제발생 시 대처 능력, 위급상황 시 해결 능력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최우수 : 15~13 ■ 우수 : 12~10 ■ 보통 : 9~7 ■ 미흡 : 6~4

위 촉 장(안)

생년월일 : 0000. 00. 00

성 명 : ○ ○ ○

위 청소년을 ○○도 제○○기 청소년참여
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(위촉기간 : 0000.00.00~0000.00.00)

0000년 00월 00일

※ 본 위촉장으로 활동내용을 증명할 수는 없으며, 활동내용은 ‘활동확인서’를 통해 확인가능함
(‘활동확인서’는 본 사업의 위탁기관인 ○○○○○○○○에서 발급 : 위탁기관의 경우)

○○도지사 ○ ○ ○

【붙임5】 청소년참여위원회 : 청소년 위원 활동확인서(안)

활 동 확 인 서(안)

○○호

인적 사항	성명	한 글		생년월일	
		한 자		성 별	
	주 소				
경력 사항	소 속				
	직 위				
	기 간 및 활동 시간		. . . ~ . . . (총 시간)		
	활 동 내 용				
용도					
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○○도지사 / ○○○○단체장(위탁의 경우) 붙임 : 세부활동내역 1부					

【붙임6】 청소년참여위원회 : 지원 서류

지 원 신 청 서

청소년 개인정보			
성명	한 글		생년월일
	한 자		성 별
주 소	(-)		
연 락 처 (H.P 포함)		E-mail	
소 속 (학교, 단체명)		학년/반(전공)	
활동경력			
기 간	소 속	내 용	비고
	※ 소속(학교, 단체명)된 곳에서 활동했던 기간과 주요 내용을 적어주세요(기존 참여 기구 활동 경력 포함)		
<p>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 ○○○○년 ○○도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지원합니다.</p> <p>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</p> <p>신청인 _____</p>			
<p>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</p>			

자 기 소 개 서

※ 일정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,
지원동기, 활동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(2매 이내)

정 책 제 안 서

※ 일정한 양식 없이 청소년 정책에 대한
제안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(2매 이내)

청소년 추천서

○○도 청소년을 대표하는 ○○○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
 ○○○(생년월일:○○○○.○○.○○.)를 추천합니다.

연 번	소속	이름	주소	연락처	서명
예 시	○○고등학교	○○○	○○구 ○○대로 000	010-1234-5 678	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13					
14					
15					
16					
17					
18					
19					
20					

【붙임7】 청소년참여위원회 : 보호자 및 학교장 동의서

보 호 자 동 의 서

(최종합격자 제출 서류, 19세 미만인 경우 제출)

성 명 :

생년월일 :

본인은 위 청소년이 ○○도 『제○○기 청소년참여위원회』 위원으로 위촉
되어 활동하는 데 동의합니다.

보호자 성 명 :

주 소 :

청소년과의 관계 :

○○○○. ○○. ○○

보 호 자 : (인)

※ 만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제출

학 교 장 동 의 서

(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, 초·중·고등학생의 경우 제출)

성 명 :

생년월일 :

본인은 위 청소년이 ○○도 『제○○기 청소년참여위원회』 위원으로 위촉
되어 활동하는 데 동의합니다.

소속기관(학교)명 :

소속기관 주소 :

○○○○. ○○. ○○

학 교 장 : (직인)

담당교사 : (인), 연락처 :

※ 초·중·고등학생의 경우 기록

【붙임8】 청소년참여위원회 :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(예시)

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(예시)

본인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, 여성가족부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(수집, 이용, 제공)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□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수집항목	성명, 생년월일, 이메일, 휴대전화번호
수집 및 이용목적	보험가입,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활동기록 유지,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보 안내
보유 및 이용기간	30년
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	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□ 일반개인정보의 선택적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수집항목	이메일, 휴대전화번호
수집 및 이용목적	보험가입,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활동기록 유지,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보 안내
보유 및 이용기간	30년
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	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정보 안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□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수집항목	생년월일
수집 및 이용목적	보험가입,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여 청소년의 활동기록 유지
보유 및 이용기간	30년
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	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의 필수적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참여활동 확인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※청소년특별회의의 활동확인서는 청소년참여포탈(www.withyouth.go.kr)을 통해 발급

20

성 명 : (서명)

【붙임10】 청소년특별회의 : 청소년 위원 활동확인서(안)

활동확인서(안)

성 명 : ○○○

생년월일 : 0000. 00. 00

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제○회 청소년특별회의
본회의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활동기간 : 0000.00.00~0000.00.00

0000년 0월 00일

여성가족부장관

※ 청소년참여포탈(www.youth.go.kr/ywith)을 통해 발급

【붙임11】 청소년특별회의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: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

○○○시·도 청소년특별회의 및 청소년참여위원회
○○○○년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서

※ 시·도, 시·군·구별 보고서를 나열하지 말고, 주요 실적을 기재하여 5페이지 내외로 간단하게 작성

I. 사업개요

- 목 적
 - 청소년들이 국가·지방자치단체 정책,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,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 도모
- 근 거 :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, 청소년기본법 제12조
- 주요내용
 - 지역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지역사회 내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 등
-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,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캠페인, 워크숍 등 활동

II. 사업추진 실적

○ 활동 현황표

구분	개소수	인원(명)	총 활동현황(회)	세부활동 내역
○○○도	1	20	30 (회의, 토론회, 캠페인 등)	- 회의 : ○회 - 토론회 : ○회 - 캠페인 : ○회
○○도 특별회의				
○○○군				
○○○구				
계				

○ 정책제안 현황

※ 당해년도 정책제안 현황을 작성

구분	건수	주요내용
○○○도		○○도 청소년 휴카페 설치·운영 제안 청소년명예부지사 제도 도입 제안 도지사와 함께하는 청소년토크콘서트 정례화
○○○군		
○○○구		
계		

○ 전년도 정책제안 이행결과

※ 전년도 정책제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

구분	전년도 정책제안		정책제안 이행결과	
	건수		건수*	
○○○도	2	- ○○○도 청소년 휴카페 설치·운영 제안 - 청소년명예부지사 제도 도입 제안	이행 완료 1, 이행 중 1	- 도내 ○○시, ○○○군 등 6개소 설치(년월) - 청소년명예부지사 제도 도입 추진 중
○○○군				
○○○구				
계				

* 이행결과 건수는 이행완료, 이행중, 미이행으로 구분하여 표기
 ※ 전년도 정책제안 건수와 정책제안 이행결과의 건수 합은 일치하여야 함

○ 기타 성과

※ 지역만의 특별한 성과 또는 토론회, 캠페인 등을 통해 거둔 성과를 작성

구분	주요내용
○○○도	도지사와 함께하는 청소년토크콘서트 정례화
○○○군	
○○○구	

Ⅲ. 자체평가

-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
-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개선·발전방안 등
- 홍보 실적(언론보도 현황)
 - ○○도 청소년특별회의 '17년 총 200건 언론 보도 달성

Ⅳ. 정산결과

- 정산총괄표 *반드시 원단위로 작성하여 주십시오.

(단위 : 원)

구분	국비	지방비	계	비고
예산교부액(A)				
집행액(B)				
집행잔액(A-B)				
이자발생액				

V. 우수사례(2장 이내)

- 제안 배경(제안의 필요성, 현황, 문제점에 대한 관련 연구자료 등)
- 주요 전략(문제해결을 위한 과정 및 추진체계를 활용한 해결책 제시)
- 기대 효과(정책의 실효성, 효과성 등 구체적 제시)

- * - 00청소년특별회의(00청소년참여위원회)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
 - 활동성과 및 활동홍보자료(사진) 등 별첨 가능